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144

제출년월일 : 2019. 11. 1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9. 8. 1.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2019.8.1.자 조직개편 관련 주관국(부서) 명칭 변경(별표)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삭제, 정정(별표)

다. 현행 법령에 맞춰 근거 법령 조항 정비 등(별표)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3(사무의 위임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생략(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4)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무처리절차가 진행중인 위임사무의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위 임 사 무(제5조제1항 관련)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1.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가.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30조의5	보건소장
	나.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구의회 내 전보·휴직 및 복직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제30조의5	구 의 회 사무국장
	다. 구의회소속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급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보건소장 구 의 회 사무국장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1. 의료급여증 회수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1. 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장애진단의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나. 장애등급의 조정 및 장애상태 확인	○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다. 등록증의 반환명령	○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동 장
	라. 장애인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마. 장애인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바.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대상자의 선정	○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발급	○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2. 기초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기초연금 수급의 신청 접수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제외) 나. 기초연금의 변경 신청 접수 다.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 접수 라.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	○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동 장
	3. 시체매장·화장신고 접수 및 처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1.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나.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 「농지법」 제49조 ○ 「농지법」 제50조	동 장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소	1.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보건소장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나.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보고 및 관리	○ 같은 법 제13조, 제18조, 제41조, 제42조, 제49조, 제69조	
	다. 감염병 표본감시 및 관리기관의 지정 등	○ 같은 법 제16조, 제36조, 제37조	
	라.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소독	○ 같은 법 제47조, 제51조	
	마. 예방위원 위촉 등	○ 같은 법 제62조	
	2. 소독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소독업의 신고 등 수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나. 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53조	
	다. 서류제출 요구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57조	
	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3.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필수예방접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임시예방접종	○ 같은 법 제25조, <삭제>	
	다.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27조	
	라.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 같은 법 제28조	
	마.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 같은 법 제29조	
	바.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절차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사.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확인	○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 같은 법 제83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소	4.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와 그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		보건소장
	가. 검진 및 역학 조사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8조, 제10조	
	나. 치료 및 보호 조치 등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5.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결핵예방접종 등	○ 「결핵예방법」 제12조	
	나.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 같은 법 제13조	
	다. 입원 명령	○ 같은 법 제15조	
	라. 결핵환자 등의 의료	○ 같은 법 제18조	
	마.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	○ 같은 법 제19조	
	6.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신고,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 수리	○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5조의3	
	나. 건강기록부의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다. 보고지시, 출입,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의7	
	라. 시정 명령	○ 같은 법 제15조의8	
	마.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청문	○ 같은 법 제15조의9, 제15조의11, 제15조의13	
	바. 폐업·휴업 및 재개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5조의10	
	사.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27조	
	아.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같은 법 제15조의17	
	자. 위반사실 등의 공표	○ 같은 법 제23조	
	7.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이하 “의원 등”이라 함)의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의원 등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다. 폐업·휴업의 신고 수리 및 폐업 신고 수리사항의 보고	○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소	라. 업무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조제2항	보건소장
	마. 보고 명령 및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바.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시정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84조	
	사.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4조, 제84조	
	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 처리	○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8. 의료지도원의 배치	○ 「의료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부터 제69조까지	
	9. 의료기관 개설 특례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다.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금지, 시정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3조 및 제84조	
	라. 의료업 정지·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4조, 제84조	
	마.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10.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및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	○ 「의료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삭 제>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나. 시술소의 폐업 · 휴업신고 처리	○ 같은 법 제40조, 제8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삭 제>	
	다. 시술소의 업무개시 명령	○ 같은 법 제59조, 제81조	
	라. 시술소의 보고 명령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제81조	
	마. 시술소의 시설 · 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 · 금지 또는 시정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81조, 제84조 <삭 제>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및 개설허가의 취소, 청문	○ 같은 법 제64조, 제81조, 제84조 <삭 제>	
	사. 시술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아. 시술소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보건소	11. 안마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보건소장
	가. 시술소 개설신고 수리	○ 「의료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나. 시술소의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3조, 제82조	
	다. 시술소의 폐업 · 휴업의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0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라. 시술소의 보고 명령 및 업무검사 등	○ 같은 법 제61조, 제82조	
	마. 시술소의 시설 · 장비 등의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 · 금지, 시정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82조, 제84조	
	바. 시술소의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 청문	○ 같은 법 제64조, 제82조, 제84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2.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설등록 수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등록 수리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15조	
	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청문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개설 등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나.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 등록 수리	○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다.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청문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14.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		
보건소	가.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 「약사법」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	보건소장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약국 폐업·휴업·재개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21조의2,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다.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제56조	
	라. 약국 또는 점포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승인	○ 같은 법 제50조제1항	
	마.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바. 업무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사.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아.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자. 관리자 등의 변경 명령	○ 같은 법 제75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소	차. 시정명령, 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 정지 등, 청문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보건소장
	카.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 같은 법 제78조	
	타. 등록증 등의 갱신 및 재교부	○ 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57조	
	파.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5. 의료기기의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신고, 신고사항 변경 및 폐업 등의 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나.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32조	
	다.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34조	
	라. 사용중지명령 등	○ 같은 법 제35조	
	마. 허가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같은 법 제36조	
	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38조	
	사. 청문	○ 같은 법 제39조	
	아.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등	○ 같은 법 제40조	
	자. 허가, 신고 등의 갱신	○ 같은 법 제49조	
	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6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소	16.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에 관한 다음 사무		보건소장
	가. 설치 및 사용신고 수리 및 신고증명서 발급	○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3조	
	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양도 또는 폐기신고 및 신고증명서발급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 제3조	
	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변동사항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3조	
	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대장 작성·비치 및 관리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3조	
	마. 의료기관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상태 지도·감독	○ 같은 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제16조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처리	○ 같은 법 제9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사. 시설장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및 시정명령 등, 청문	○ 같은 법 제63조, 제84조, 제68조	
	17.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신고 및 변경신고,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수리	○ 「의료법」 제16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제7조	
	나.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 수리	○ 같은 규칙 제9조	
	다. 지도·점검	○ 같은 규칙 제11조	
	18.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다음 사무		
	-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관련 [별표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삭제>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소	19.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약사법」 제45조제1항	
	나.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신고수리	○ 같은 법 제45조<삭제>	
	다. 보고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69조	
	라. 업무개시 명령 등	○ 같은 법 제70조	
	마.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1조	
	바. 개수명령	○ 같은 법 제74조	
	사. 허가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청문	○ 같은 법 제76조 및 제77조	
	아. 허가증 등의 갱신	○ 같은 법 제80조	
	자. 허가증 등의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차. 과징금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1조	
	카. 과태료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20.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에 관한 다음 사무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제3항	
	가. 등록 및 등록된 사항 변경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3조 ○ 같은 법 제44조의2 제4항	
	나. 폐업·휴업·재개 신고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같은 법 제69조	
	다.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등	○ 같은 법 제71조	
	라. 폐기 명령 등	○ 같은 법 제76조의3, 제77조	
	마. 등록 취소, 청문	○ 같은 법 제78조	
	바. 약사 감시원의 임명 및 배치	○ 같은 법 제98조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주 관 국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보건소	2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보건소장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등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나. 검사결과 통보 수리 및 등록대장 관리	○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다. 시정 명령	○ 「의료법」 제63조	
	2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나. 구급차등의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	○ 같은 법 제50조	
	2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업무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의제2항	
	나. 청문	○ 같은 법 제56조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7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위임사무(제5조제1항 관련)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안전행정국 (총무과)	1.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생략〉
	가. ~ 라. 〈생 략〉	○ 〈생 략〉	
복지교육국 (어르신복지 장애인과)	1. 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생 략〉
	가. ~ 나. 〈생 략〉	○ 〈생 략〉	
	다. 〈생 략〉	○ 같은 법 제32조제3항 〈생 략〉	
	라. ~ 사. 〈생 략〉	○ 〈생 략〉	
	2. 기초노령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의 신청 접수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제외)	○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나. 기초노령연금의 변경 신청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다. 미지급 기초노령연금 지급청구 접수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라. 〈생 략〉	○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3. 〈생 략〉	○ 〈생 략〉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1.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생 략〉
	가. ~ 나. 〈생 략〉	○ 〈생 략〉	

개정안(상정안)

[별표]

위임사무(제5조제1항 관련)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1.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현행과 같음〉
	가. ~ 라.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1. 장애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32조의3제2항 〈현행과 같음〉	
	라. ~ 사.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 기초연금 수급 신청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기초연금 수급의 신청 접수 (단,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제외)	○ 「기초연금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나. 기초연금의 변경 신청 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다.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 접수	○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라. 수급권 상실신고 접수	○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	1. 농지의 취득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 행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3.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 사무		〈생 략〉
	가. 정기예방접종	○ 〈생 략〉	
	나. 〈생 략〉	○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다. ~ 아. 〈생 략〉	○ 〈생 략〉	
	6.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 사. 〈생 략〉	○ 〈생 략〉	
	10.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생 략〉	○ 〈생 략〉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나. 〈생 략〉	○ 〈생 략〉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다. ~ 라. 〈생 략〉	○ 〈생 략〉	
	마. 〈생 략〉	○ 〈생 략〉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바. 〈생 략〉	○ 〈생 략〉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사. ~ 아. 〈생 략〉	○ 〈생 략〉	
	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생 략〉	○〈생 략〉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나.~다. 〈생 략〉	○ 〈생 략〉	

개정안(상정안)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3.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 사무		〈현행과 같음〉
	가. 필수예방접종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5조, 〈삭제〉	
	다. ~ 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6.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 사.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아.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같은 법 제15조의17	
	자. 위반사실 등의 공표	○ 같은 법 제23조	
	10. 접골사, 침사, 구사의 시술소(이하 "시술소"라 함)에 관한 다음 사무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삭제〉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제81조 〈현행과 같음〉 〈삭제〉	
	다. ~ 라.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삭제〉	
	바.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삭제〉	
	사. ~ 아.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3.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 사무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나.~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 행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14.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생 략〉
	가. 〈생 략〉	○ 〈생 략〉	
	나. 〈생 략〉	○ 〈생 략〉	
	다. 〈생 략〉	○ 〈생 략〉	
	라. 〈생 략〉	○ 같은 법 제23조제2항	
	마. ~ 자. 〈생 략〉	○ 〈생 략〉	
	차. 〈생 략〉	○ 〈생 략〉	
	카. ~ 하. 〈생 략〉	○ 〈생 략〉	
	18.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다음 사무		
	- 〈생 략〉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관련 〔별표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제7호	
	19.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생 략〉	○ 〈생 략〉	
	나. 〈생 략〉	○ 같은 법 제45조제5항	
	다. ~ 차. 〈생 략〉	○ 〈생 략〉	
	카. 〈생 략〉	○ 〈생 략〉	

개정안(상정안)

주관국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소	14.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21조의2,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50조제1항	
	마. ~ 자.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차. 시정명령,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69조의4, 제75조의2, 〈현행과 같음〉	
	카. ~ 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18.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에 관한 다음 사무		
	- 〈현행과 같음〉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제7호 관련 〔별표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삭제〉	
	19.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 같은 법 제45조〈삭제〉	
	다. ~ 차.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카.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의안의 시행에 비용발생 또는 재원조달 등이 일어나지 않음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김미정 (☎ 3153-8502)